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67 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윤준병・임광현・주철현

송옥주 • 이원택 • 조계원

박민규 · 정동영 · 허 영

신영대 · 김태선 · 문대림

황명선 · 김윤덕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, 임업후계자가 직업 임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, 20톤 미만의 소형어선, 농어업인의 융자 담보물,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고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및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, 해당 규정들은 농어촌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,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필요성이 있음.

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

면사항 중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개간농지에 대해,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8조제1항).
- 나. 「농어촌정비법」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해,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8조제2항).
- 다.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 면제 또는 취득세의 50% 경감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8조제3항).
- 라.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취득세,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, 그리고 어업권·양식업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9조).
- 마.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10조).
- 바.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, 시설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

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13조제2항).

- 사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,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).
- 아.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167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"2025년"을 "2030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2025년"을 "2030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2025년"을 각 "2030년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2025년"을 "2030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2025년"을 "2030년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5년"을 "2030년"으로 한다.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5년"을 "2030년"으로 한다. 제15조제1항 중 "2025년"을 "2030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"을 "2030년"으로 한다.

제167조 중 "2025년"을 "2030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	제8조(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
등) ①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	등) ①
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	
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	
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	
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	
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	
서는 취득세를 <u>2025년</u> 12월 31	<u>2030년</u>
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「한국	
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	
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	
촌공사(이하 이 조 및 제13조	
에서 "한국농어촌공사"라 한다)	
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	
를 면제하지 아니한다.	
② 「농어촌정비법」이나 「한	2
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	
법」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	
농지,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・	
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	
득세를 <u>2025년</u> 12월 31일까지	<u>2030년</u>
면제한다. 다만, 한국농어촌공	
사가 교환・분합하는 경우에는	

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.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 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 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·분합 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 지 면제하고,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(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 로 한정하되, 보전산지를 추가 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 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 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 에 한정한다)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 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④ (생략)

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

- ① (생 략)
-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에

③
<u>2030년</u>
<u>2030년</u>
④ (현행과 같음)
]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
① (현행과 같음)
②

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<u>2025년</u>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
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어업권·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.

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 합법인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)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

<u>2030년</u>
③
<u>2030년</u>
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
관련 감면 등) ①
<u>2030년</u>

감한다. 다만, 중앙회,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·영어자금·영림자금(營 林資金)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13조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 ① (생략)
 -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한다. 다만, 제1호, 제1호의2, 제1호의3, 제2호, 제3호 및 제5 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농업인, 농업법인 및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 · 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 된 취득세를 추징(제4호 및 제 4호의2는 제외한다)한다.

,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
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 ① (현
행과 같음)
②
2030년

1. ~ 5. (생략)

③ · ④ (생 략)

제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 ① 「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법 | 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제1항에 따 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 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 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 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(「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제7호부터 제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 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 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50을,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

1	\sim	5	(혀행과	가으)
Ι.	\sim	ി.	(엉엉똬	イラル

3 .	4	(현행과	같음)
-----	---	------	-----

제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
대한 감면) ①
<u>2030년</u>

31일까지 경감한다.

②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(이하 이 조에서 "지방농수산물공사"라 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지방세법」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한다.

	②
	<u>2030년</u>
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	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
	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
	<u>203</u>
	<u>0년</u>